#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771

발의연월일: 2021. 10. 1.

발 의 자:임종성·안호영·우원식

강선우 • 윤미향 • 송기헌

김원이 • 아수진비 • 한정애

송옥주 • 민병덕 의원

(11일)

###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적용제도를 두고 있음.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고 있음.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이른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이에 오프라인에서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물론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다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보다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이들의 노무제공 특

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징수 체계와 급여·보상 제도를 마련하고자함. 이를 통하여 산재보험을 '사업주 책임보험'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발전시키고자함.

#### 주요내용

- 가.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안 제48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
  - 1)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보수) 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
  - 2)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 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3)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율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회 심의를 거쳐 근로자의 산재보험료율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안 제48조의6제5항 및 제6항)
  - 1)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1/2씩 부담하도록 함
  - 2)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경감 또는 면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 다. 노무제공자 신고 및 보험료 납부(안 제48조의6제7항 및 제9항)
  - 1) 사업주가 노무제공 내용, 월 보수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되 사업 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노무제공자가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

- 2)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부담분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사업주 부담 분 보험료와 함께 공단에 납부하도록 함.
- 라.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안 제48조의7제1항·제4항·제7항 및 제8항)
  - 1)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내용, 월 보수액 등 신고는 플랫폼 운영자가 하도록 함.
  - 2)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함.
  - 3)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공단의 자료제공 요청에 협조하도록 함.
  - 4) 플랫폼 운영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공단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7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 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 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본문 중 "근로자,"를 "근로자 또는"으로,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제94조의2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노무"를 "노무제공자 노무"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를 "노무제공자로부터"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를 "노무제공자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을 "제48조의6제7항"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을 "제48조의6제7항"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한다.

제4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의2제1호에 따른 노무제

공자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도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 따른 도급인을 말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8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6조의3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의 월별 보험료(고용보험료에 한한다)는 월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⑤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노무제 공 내용, 월 보수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률 제1785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4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공단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의6 및 제48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6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의3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이하 "산재보 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② 제16조의3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별 보험료(산 재보험료에 한정한다)는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④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율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고용노동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1씩 부담한다. 다만, 사용종속관계(使用從屬關係)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 ⑥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재해율, 월 보수액, 산재보험료,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①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 월 보수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 보험 노무제공자가 신고할 수 있다.
- ⑧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 및 월 보수액 정정 신고, 산재보험료 정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⑨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①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 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공제계산서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의 신청, 적용 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 통지 및 산재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 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
- 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노무를 제공받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로 본다.

- 2.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산정·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2호, 제16조의2, 제16조의4,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12,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료율"은 "제48조의6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로 본다.
- 3.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산재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본다.
- 4.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제1항·제3항,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본다.
- 제48조의7(플랫폼 운영자의 산재보험 특례)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의2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이하 "플랫폼 운영자"라 한 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의2제4호에 따른 플랫폼 이용

사업자(이하 "플랫폼 이용 사업자"라 한다)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의2제2호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 이용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플랫폼 운영자의 성명과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2.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기 시 작한 날 또는 종료한 날
- 3.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성명과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 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공단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4조의2제1호가목의 플랫폼 종사자(이하 "플랫폼 종사자"라 한다)의 노무제공횟수 및 그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48조의6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내용, 월 보수액 등 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하여야 한다.
- ④ 제48조의6제9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부담분은 플랫폼 운

영자가 원천공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납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플랫폼 운영자는 제4항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 종사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그 원천공제 내역을 알려야 한다.
- ⑥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의 원천 공제에 관한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플랫 폼 운영자 및 플랫폼 운영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 1.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 제4항의 업무와 관련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 2. 공단의 경우 :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 운영자의 사무 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관계서류의 조사
- ① 플랫폼 운영자는 제3항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내용, 월 보수액 등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플랫폼 종사자의 해당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노무제공이 종료된 날부터 3년 동안 온라인 플랫폼 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⑧ 공단은 플랫폼 운영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⑨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 등의 신고 및 통보, 공단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및 통보, 보고 등의 요구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3을 삭제한다.

제49조의6 전단 중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6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2항제3호"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1호"를 각각 "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6항제1호 및 제48조6제1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6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2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4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4호"를 "제48조의2제8항제4호, 제48조의3제6항제4호"를 "제48조의2제8항제4호, 제48조의3제6항제4호"를 "제48조의2제8항제4호, 제48조의3제6항제4호 및 제48조의6제12항제4호"로, "포함한다) 및 제48조의4제5항제1호"를 "포함한다), 제48조의4제5항제1호 및 제48조의4제5항제1호"를 "포함한다), 제48조의4제5항제1호 및 제48조의4제5항제2호"를 "포함한다), 제48조의4제5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6. 제48조의6제7항 및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 월 보수액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 7. 제4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8. 제48조의7제7항을 위반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내용, 월 보수액 등 신고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 제48조의3제2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85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4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개 정 안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 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 ----- 근로자 또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 항에 해당하는 예술인(이하 "예 술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 한다)-----제77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노 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 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 한 월별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을 개인별 월평균보수로 보아 산정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의3(산재보험료등의 면제 제22조의3(산재보험료등의 면제 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 에 관한 특례) ① -----상보험법 | 제125조제1항에 따 ----- 제94조의2제1호에 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따른 노무제공자-----

혅 행 개 정 안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때에는 특수형태근로 ----- 노무제공자 노 종사자 노무 제공 신고일(특수 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제공자로<u>부터</u>-----노무를 제공받은 날 및 특수형 태근로종사자의 업무내용 등에 노무제공자의 -----대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전의 산재보험료 및 이에 대 한 가산금 • 연체금(이하 "산재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성립한 보험관 계의 신고 및 「산업재해보상 ----- 제48조의6제7항 보험법」 제125조제3항에 따 른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제공자-----에 대한 노무제공 신고 2. 사업주가 이미 제7조에 따라 성립한 보험관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 제48조의6<u>제7항</u>-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해 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 -- 노무제공자----한 노무제공 신고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생 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현

현 행	개 정 안
략)	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
	법」 제94조의2제1호에 따른
	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의 부
	• 징수 등을 위하여 노무제공
	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급인(「산업안전보건법」 ㅋ
	조제7호 따른 도급인을 말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u>기관·단체에 대통령령으로</u>
	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u>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u>
	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u>다.</u>
② <u>제1항</u> 에 따라 공단 또는 건	③ 제1항 또는 제2항
강보험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	
을 면제한다.	<u>.</u>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
험 특례) ① (생 략)	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6조의3에도 불구하고
	무제공자의 월별 보험료(고용
	<u> </u> 험료에 한한다)는 월 보수액

현 행	개 정 안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u>②</u> · <u>③</u> (생 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u>&lt;신 설&gt;</u>	⑤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노
	무제공 내용, 월 보수액 등을 공
	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u>④</u> ~ <u>⑥</u> (생 략)	<u>⑥</u> ~ <u>⑧</u> (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제48조의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제48조의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에 대한 특례) ① ~ ⑥ (생 략)	에 대한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⑦ 공단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
	<u>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사무에</u>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
	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
	<u>다.</u>
<u> &lt;신 설&gt;</u>	제48조의6 (노무제공자의 산재보
	헌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제94조의3에 따라 산재
	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이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
	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현 행	개 정 안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제16조의3에도 불구하고 산
	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별 보험
	료(산재보험료에 한정한다)는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
	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율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
	<u> 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u>
	<u>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u>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현 행	개 정 안
	사업주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가 각각 2분의1씩 부담한다. 다
	만, 사용종속관계(使用從屬關
	係)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
	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
	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⑥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재해
	율, 월 보수액, 산재보험료, 노
	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재보험 노
	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⑦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
	공자의 노무제공 내용, 월 보수
	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아
	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신고할 수 있다.
	⑧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
	제공 내용 및 월 보수액 정정

현 행	개 정 안
	신고, 산재보험료 정산 등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u>다.</u>
	⑨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공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
	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⑩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공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
	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공제계산서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발급
	<u>하여야 한다.</u>
	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
	보험 적용 제외의 신청, 적용 제
	외 사유의 소멸 사실 통지 및
	산재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필
	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u>정한다.</u>
	⑩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
	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행 개 정 현 안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u>산재보험관계의 성립·</u>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 제3항, 제7조제2호, 제10조(제 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 우 "근로자"는 "근로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고 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 거나 노무를 제공받지 아니하 게 되었을 때"로 본다. 2.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산정・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 제2호, 제16조의2, 제16조의4.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 의12, 제17조, 제18조제1항, 제 19조 및 제19조의2를 준용한 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 보험 노무제공자"로, "산재보 험료율"은 "제48조의6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로 본다. 3.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현 행	개 정 안
	충당과 반환, 산재보험료와 연
	체금의 징수·독촉 등에 관하
	여는 제22조의2, 제23조, 제24
	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
	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
	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
	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
	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노
	무제공자"로 본다.
	4.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
	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
	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
	<u>조 및 제40조제1항·제3항, 제</u>
	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
	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로 본다.
<u>&lt;신 설&gt;</u>	제48조의7(플랫폼 운영자의 산재
	보험 특례) ①「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제94조의2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이하 "플랫폼 운

현 행	개 정 안
	영자"라 한다)는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제94조의2제4호에
	따른 플랫폼 이용 사업자(이하
	"플랫폼 이용 사업자"라 한다)
	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94조의2제2호에 따른 온라인 플
	랫폼(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 이용 개시일 또는 종료일
	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
	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플랫폼 운영자의 성명과 주
	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
	<u>지)</u>
	2.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
	하기 시작한 날 또는 종료한
	날
	3.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성명
	과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법
	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u>소재지)</u>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② 공단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
	조의2제1호가목의 플랫폼 종사
	자(이하 "플랫폼 종사자"라 한
	다)의 노무제공 횟수 및 그 대
	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48조의6제7항 본문에도 불
	구하고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
	공 내용, 월 보수액 등 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하여야 한다.
	④ 제48조의6제9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종
	사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부담분은
	플랫폼 운영자가 원천공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현 행	개 정 안
	•납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플랫폼 운영자는 제4항에 따
	라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경
	우에는 해당 플랫폼 종사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그 원
	천공제 내역을 알려야 한다.
	⑥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의
	원천공제에 관한 지도 등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플랫폼 운영자 및 플랫폼
	운영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1.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 제4항의 업무와 관련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요
	<u> </u>
	2. 공단의 경우 :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 운영자의

현 행	개 정 안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관계서류의 조사
	⑦ 플랫폼 운영자는 제3항에 따
	른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내용, 월 보수액 등 신고와 관련
	된 정보를 플랫폼 종사자의 해
	당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이 종료된 날부터 3년 동안

다.

8 공단은 플랫폼 운영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 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 보관하여야 한

⑨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 등의 신고 및 통보, 공단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및 통보, 보고 등의 요구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 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

현 행 개 정 안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 만, 사용종속관계(使用從屬關 係)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 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료를 부 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 노동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신고하고 내야 하 며,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 을 사업주에게 내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제2항 본문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 는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

혅 행

개 정 안

을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공제계 산서를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⑤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 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서는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 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 보험 적용 제외의 신청, 적용 제 외 사유의 소멸 사실 통지 및 산재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필 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6(벌칙) 제29조의3제6항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 과할 수 있다.

|제49조의6(벌칙)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 조의3제6항제3호에 따라 준용 조의3제6항제3호 및 제48조의6 제12항제3호-----

현행	개 정 안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50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1 <u>제48</u> 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1호에 따	제48조의3제6항제1호 및 제48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조6제12항제1호
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u>제48</u> 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1호에 따	제48조의3제6항제1호 및 제48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조의6제12항제1호
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	
신고,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	
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	
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	
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 제29조의3제1항( <u>제48조의2제</u>	2 <u>제48</u> 조의2제8
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	항제3호, 제48조의3제6항제3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호 및 제48조의6제12항제3호-
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융거	
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	
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	
의 제공을 거부한 자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3.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
	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u>따르지 아니한 자</u>
<u>3</u> . 제44조( <u>제48조의2제8항제4호</u>	<u>4</u> <u>제48조의2제8항제4호,</u>
및 제48조의3제6항제4호에 따	제48조의3제6항제4호 및 제48
라 준용되는 경우를 <u>포함한</u>	<u> 조의6제12항제4호</u> <u>포함한</u>
다) 및 제48조의4제5항제1호	<u>다), 제48조의4제5항제1호 및</u>
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	제48조의7제6항제1호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	
한 자	
<u>4</u> . 제45조제1항(제48조의2제8항	<u>5</u>
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u>포함한다) 및 제48조의4제</u>	<u>포함한다), 제48조의4제5</u>
<u>5항제2호</u> 에 따른 질문에 거짓	항제2호 및 제48조의7제6항제
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	<u>2ই</u>
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u>&lt;신 설&gt;</u>	6. 제48조의6제7항 및 제48조의
	7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 노무
	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 월
	보수액 등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현 행	개 정 안
<u> &lt;신 설&gt;</u>	7. 제4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에
	<u>따르지 아니한 자</u>
<u>&lt;신 설&gt;</u>	8. 제48조의7제7항을 위반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내
	용, 월 보수액 등 신고와 관련
	된 자료 또는 정보를 보관하
	<u>지 아니한 자</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